

장학규정

제	정	1995.	3.
제	정	1997.	3.
제	정	1997.	9.
제	정	1999.	10.
제	정	2001.	2.
제	정	2007.	9.
제	정	2011.	4.
개	정	2013.	3.
개	정	2014.	1.
개	정	2016.	8.
개	정	2017.	3.
개	정	2018.	2.
개	정	2018.	7.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6.08.29.)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 수혜자격으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근신이상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은 해벌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1. 학업성적 및 품행이 우수한 학생
2. 학교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3.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의 직계자녀
4. 본교 재학 중인 교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자녀
5. 학과 학부(과)(과)교수가 추천한 학생으로서 학내 근로를 원하는 학생
6.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7. 기타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제 2장 장학위원회

제4조 (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학사1부총장, 학사2부총장, 학사3부총장보,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2018.02.08.)(개정2018.07.02.)
2.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2018.02.08)
3.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3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제7조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3. 대학원 장학금

제8조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교내장학금의 주요 종류 및 수혜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장학금
 - 가.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나. 재학생 우수장학금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1)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
 - (2)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F학점 과목과 중도포기 과목이 없는 자.
 - (3) 성적(85%), 봉사·인성·경제력·우송마일리지(15%)를 종합하여 우수자 순으로 한다.
단, 1학기 성적으로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여름학기 성적으로 겨울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2학기 성적으로 다음 해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겨울학기 성적으로 다음 해 여름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 다. 재입학 및 편입학 학생은 1개 학기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 라. 기타 장학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 마.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한 후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한 후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은 소멸된다.
2.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교직원 장학금
 - 가. 보훈장학금: 국가유공대상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나. 보훈대상(본인)장학금: 본인이 국가유공 대상자인 자
 - 다. 교직원장학금: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배우자 포함)과 직계자녀로서 본 대학에 재학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4학년의 경우는 취득학점 미적용)
3. 봉사·실습장학금: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여 학생들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에 근무하도록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 봉사·실습 장학생
4. 특별 장학금
 - 가. 입학 시 선발된 수능성적 우수자 및 외국어성적 우수자는 4년간 납입금 전액 및 일부에 상

- 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 학업성적에 있어서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이며, 평점 평균이 3.75 미만인자는 탈락하고 다음 학기에 3.75 이상일 때는 다시 지급한다.
- 나. 국가시험에 준하는 시험 및 기술고시 등에 합격한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따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 다. 기술 체육 및 예능분야에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시회에서 탁월한 실기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국위를 선양한 학생, 기타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으로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 라.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업계에서 명망이 있고 학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5. 해외연수 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해외연수 및 유학 등 학업에 관련된 목적으로 출국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6. 기타 장학금: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장학금 및 그 이외의 장학금은 각각 세부 장학금 지급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제9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 단체 또는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0조(대학원장학금)** 대학원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4장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 제11조(장학생 배정)** 장학생의 인원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과)(과) 및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장학생 선정절차)** 위원회에서 학부(과)(과)에 배정된 장학생 수를 감안하여 지도교수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당 학부(과)(과)장에게 추천하며, 학부(과)(과)장은 추천된 학생을 심사하여 순위를 정한 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13조(장학생의 확정)** 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장학생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 제1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선정된 학생에게 사전감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학기로 한다.
- 제16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단, 봉사, 실습장학금 등 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 장학금 급여 신청서의 허위기재
 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학생
- 제1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서 선정된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19조 (기타)** 장학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